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1년 6월 | 2021/06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CT 실무그룹

제 14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21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반적 문제(disruption) 상황에서의 PCT 보호책 강화

실무그룹은 아래 내용에 관한 PCT 규칙 82의 4의 개정안을 2021년 10월에 있을 차기 PCT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4/11 참고).

- 이해당사자가 PCT 규칙에 따른 기간의 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요청 시 관청이 증거 제출 요건 면제 가능
- 일반적 문제를 겪고 있는 관청이 최대 2개월의 갱신가능한 연장기간을 마련하여 해당 기간중에 만료되는 PCT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을 해당 기간의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또한 실무그룹은 2020년 4월 9일 발표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된 해석에 대한 성명과 권고되는 특허협력조약(PCT) 관행 변경사항”(문서 PCT/WG/14/9)의 시행에 있어서의 관청들의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선국제출원의 인증등본

실무그룹은 국제출원이 후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을 인증등본(certified copies)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를 참고하세요.

검토했습니다(문서 PCT/WG/14/16). 대표단들은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을 대신하여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 선국제출원의 사본을 등록하는 방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표단에서는 관련된 출원의 수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IT 개발 비용을 정당화 할지, 또한 제안된 인증 방법이나 제안된 인증서 서식이 파리조약 제 4D 조제 3 항의 요건을 충족할지를 포함한 몇 가지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해당사자에게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해당 이슈들을 해결하고 차기 실무그룹 회의에 개정된 제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열목록 전담반

실무그룹은 서열목록 전담반(Task Force on Sequence Listings)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문서 PCT/WG/14/5). 시행 일정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해당 전담반이 “빅뱅” 날짜의 연기에 대한 권고를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관청들을 해당 포럼에서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¹.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특허협력조약에 정식 통합하는 제안

실무그룹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PCT 시스템에 정식으로 통합하여 우선심사를 제공하도록 PCT 규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자는 일본과 대한민국, 영국, 미국의 제안을 고려했습니다(문서 PCT/WG/14/10). 많은 대표단이 해당 제안에 관심을 보인 한편, 일부 대표단은 특히 관청들의 업무량,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요청 처리를 위한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제안과 PCT 시스템의 목표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일본과 대한민국, 영국, 미국에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보고 차후의 실무그룹 회의에서 수정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서비스

실무그룹은 국제출원의 풀 텍스트(full text) 처리로 가기 위한 제안들의 대체적 방향을 승인하고, 국제사무국이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청 및 사용자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문서 PCT/WG/14/8).

실무그룹은 또한 PCT 전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행중인 계획들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PCT-SAFE 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몇몇 수리관청들은, 2022 년 7 월 1 일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PCT-SAFE 의 사용을 국제사무국이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각자의 준비상황에 대해 실무그룹에 보고했습니다.

¹ 그 후 전담반은 “빅뱅” 날짜를 2022 년 7 월 1 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으며, 회람(Circular)을 발행하여 해당 연기에 대해 모든 IP 관청들과 협의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구함.

기타 사항

실무그룹은 다음과 관련한 보고서들도 검토했습니다.

- 특허심사관 훈련 조정(문서 PCT/WG/14/13)
- 실체심사관 훈련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자료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문서 PCT/WG/14/15)
- PCT 에 따른 기술원조 조정 (문서 PCT/WG/14/17)
- PCT 최소문헌 전담반(문서 PCT/WG/14/4)
- IP5 관청들 간 PCT 협력심사(CS&E) 시범사업 평가단계(문서 PCT/WG/14/6). 국제사무국이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2020 년에 시작되어 2022 년 6 월 종료될 예정.
- 지정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 시범사업. 미국 특허상표청이 2021 년 초에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추가 국제조사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됨(문서 PCT/WG/14/12)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문서 PCT/WG/14/7)
- 제 28 차 PCT 국제기관회의(문서 PCT/WG/14/2 및 PCT 뉴스레터 2021/04 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국제출원(문서 PCT/WG/14/3)

요약서 및 관련 문서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4/18)를 아래 WIPO 웹페이지에서 작업 문서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2348

회의에 관한 보고서 초안도 적절한 때에 상기 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WIPO 의 수수료 납부 플랫폼을 통한 PCT 수수료 온라인 납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납부하는 출원 수수료 및 국제사무국(IB)에 납부하는 보충적 국제조사료

2021 년 6 월 14 일부터 아래의 PCT 관련 수수료들의 온라인 납부가 WIPO 의 수수료 납부 플랫폼(Payments platform)을 통해 관리됩니다.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신규 국제출원을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CHF, EUR, USD 로 납부)

- 국제사무국에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CHF 로만 납부)

온라인 납부 방법과 각 방법별로 허용되는 통화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WIPO 당좌계좌(CHF 만)
- 신용카드(CHF, EUR, USD. 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CHF 만)
- 페이팔(CHF, EUR, USD)
- 은행송금(CHF, EUR, USD)

온라인 납부 기능 접근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용자들께서는 평소대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나, 납부 화면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화면의 스크린샷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597>

여러분의 WIPO 계정이 WIPO 당좌계좌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기본 납부방법으로 설정되지만, 다른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나 페이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PCT 와 납부 플랫폼 간 통합이 개선되어, ePCT 에서 납부 플랫폼에 바로 접근하시면 당좌계좌 이용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IPO 당좌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CHF 로 수수료 납부 시 “은행송금”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CHF 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송금은 모두 당좌계좌 잔액을 충전하는 것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WIPO 에의 PCT 수수료 온라인 납부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597>

납부 플랫폼은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epayweb/v2/summary.xhtml>

납부 플랫폼에 관한 추가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finance>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로 제출된 국제출원의 수리를 중단할 예정인 관청들

수리관청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RO/CA) 및 국제사무국(RO/IB) - 제공지

지난 PCT 뉴스레터 2021/05 호(및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의 경우 추가로 2021/02 호 및 2021/04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과 국제사무국은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을 2021 년 7 월 1 일부터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PCT-

SAFE 사용자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ePCT 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PCT-SAFE 의 출원 초안은 선택한 수리관청에 2021 년 6 월 30 일 자정(현지 시간)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PCT-SAFE 사용자께서는 선택하신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경우 ePCT 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ePCT 를 이용하실 수 있는 수리관청의 목록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EFilingServers.xhtml>

PCT-SAFE 에서 ePCT 로 전환하는 데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PCT 운영국 고객지원과(PCT Operations Customer Support Section, pct.eservices@wipo.in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PCT 통계자료

2021 년 PCT 연례보고서

2021 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20 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0 년 PCT 출원(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포함)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국제특허제도인 PCT 의 운영실적 및 2019 년(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년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특별 주제(하기 참조)에 대한 내용과 PCT 의 이점에 대한 요약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 특별 주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2020 년도 PCT 출원에 미친 영향을 처음으로 통찰해보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고자 취한 조치들로 인해 즉각적이고 상당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GDP 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PCT 출원 건수는 2020 년 4%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 년 상반기에는 주로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에서의 혁신의 증가로 전기공학분야의 출원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PCT 출원인들이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는 출원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가 7 월부터 9 월까지 반등한 뒤 2020 년도 후반에 바이러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08 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출원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고, 여러 지역에서 출원이 진화한 모습을 조명합니다.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548&plang=EN>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이 곧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 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조사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2021 년 8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	USD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USD
유럽 특허청	JPY
일본 특허청	EUR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CA, CN, EP, JP)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웨비나 녹화자료

WIPO 서열 검증기

2021 년 5 월 12 일에 제공된 웨비나 “WIPO Sequence Validator” 녹화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 및 웨비나에서 나온 질의응답 자료들(PDF)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2850

WIPO ST.26: 고급

2021 년 5 월 19 일에 제공된 웨비나 “WIPO ST.26: Advanced” 녹화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 및 웨비나에서 나온 질의응답 자료들(PDF)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2851

“PCT 살펴보기” 웨비나 시리즈: PCT 의 인용에 따른 보완 이해하기

2021 년 5 월 27 일에 제공된, “PCT 살펴보기(Exploring the PCT)”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인 웨비나 “Understanding PCT incorporation by reference” 녹화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자료(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ePCT 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웨비나 시리즈: ePCT,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제출하기

2021 년 6 월 2 일 및 3 일에 제공된 웨비나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ePCT webinar series: ePCT, fil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RO/IB” 녹화자료들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자료(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웨비나 (아랍어)

“PCT 살펴보기”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인 웨비나 “Best practices for filing a PCT application” 녹화자료가 아랍어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자료(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cording/3420069816628351752> (녹화자료)

https://www.wipo.int/pct/ar/seminar/webinars/2021/8_6_2021.pdf (발표자료)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새로 발견된 납부 요청서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 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PCT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수수료 납부 요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그간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공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WPTD Office - World Patent & Trademark Database”에서도 납부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가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들이 WIPO 에 제보한 여러 다른 예시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추가 전반적인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CT 제 21 조제 2 항(a)).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제 29 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 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시고, 그러한 납부 요청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께서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상기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단체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기관의 발명의 단일성 결여 판단에 대응하기

Q: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조사료를 납부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서식 PCT/ISA/206). 국제조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출원 중에서 청구범위에 처음 언급된 발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었다는 국제조사기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범위 전체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발명의 단일성 결여 판단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조사료는 국제조사기관에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및 해당 조사와 관련한 모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² 국제조사기관에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국제조사기관은 각 추가 발명에 대해 추가조사료를 납부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0.1).

요구서의 우편 발송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요구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국제조사기관은 추가수수료가 필요한 발명들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출원 중에서 청구범위에 처음 언급된 발명("주 발명")과 관련된 부분만을 토대로 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받게 됩니다. 즉, 서식 PCT/ISA/206 에 명시된 특정 청구범위만 다뤄집니다. 청구된 추가조사료를 상기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면, 국제조사보고서에 출원에 있는 모든 발명의 조사 결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 전체를 조사하려면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발명의 단일성 결여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PCT 규칙 40.2(c)).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려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셔야 합니다.

² PCT 규칙 13.1 에 따르면, 국제출원은 단일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련되어야 한다.

- (해당 기간 내에) 추가조사료 및 (해당 국제조사기관에서 부과 시) 이의신청료 납부(국제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확인)³
- 발명의 단일성이 충족된다는 취지 또는 요구된 추가수수료 건수가 과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제출

수수료가 납부되면 국제조사기관 내에 구성된 검토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해당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자체 결론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도록 지시합니다. 검토기관에서 이의신청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납부된 이의신청료도 반환됩니다. 출원인이 요청하면 이의신청 내용과 이에 대한 결정 내용이 모두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 통지됩니다(PCT 규칙 40.2(c)).

국제조사기관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PCT 규칙 66.1(e)) 실제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문제에 있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68.2).

또한, 질문자께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 비공식 의견을 제출하여 출원에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었다는 국제조사기관의 판단에 반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 의견은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공개일에 PATENTSCOPE 에 공개되고, 국내단계에서 고려되도록 지정/선택관청에 전달됩니다. 비공식 의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PCT 뉴스레터 2015/01 호 및 2015/04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13.pdf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발명들 중 하나로 보충적 국제조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실 수 있지만(PCT 규칙 45 의 2.1(d)), 해당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비슷하게 국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청구범위를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5 의 2.5(d)).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국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국내단계에 진입 시 PCT 제 28 조에 따라 각 지정관청에서 (또는 PCT 제 41 조에 따라 각 선택관청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있지만, 해당 지정국(또는 선택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보정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으면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PCT 제 28 조제 2 항 및 제 41 조제 2 항). 또한, PCT 제 17 조제 3 항(b) 및 제 34 조제 3 항(c)에 따르면, 지정국(또는

³ 추가수수료는 각 개별 발명별로 요구되지만, 이의신청료는 (해당 시) 납부 요구를 받은 추가조사료 건수와 관계 없이 단일 수수료로 납부.

선택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관청이 국제조사기관의 발명의 단일성 결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국제출원에서 조사가 행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에 관한 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관청들은 조사가 행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국내조사를 위한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는 한편, 다른 관청들은 분할출원 및 관련 출원료의 납부를 요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각 국내편 참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이, 예를 들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서, 또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청은 추가수수료나 분할출원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발명의 단일성 결여 판단에 대응하고 모든 청구범위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단계에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내단계에서 해당 이슈를 해결할 가능성이 아직 존재할 수 있지만, 조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특별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각 지정관청에서 분할출원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 PCT 시행세칙 부속서 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ai/annex_b.html

또한, 아래에서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부분의 단락 5.114 내지 5.123 및 7.015 내지 7.021 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경제부 지식재산국(몬테네그로),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예정

유럽 특허청, 새로운 온라인 출원(CMS) 접수 중단 예정

미국 특허상표청: 2021 년 6 월 18 일 휴무

PCT 정보 업데이트

CL 칠레 (전화번호)

EP 유럽 특허청 (전자출원)

GR 그리스 (전화번호, 이메일 통지, 필요한 사본 수)

IS 아이슬란드 (팩스 사용 중단)

ME 몬테네그로 (전자출원)

MT 몰타 (관청명, 팩스번호)

MX 멕시코 (종이사본)

PCT 자료 (일본어)